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1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희승 · 박홍배

문대림 • 임호선 • 이원택

문금주 • 주철현 • 송옥주

이병진 · 임미애 · 서삼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, 밀,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.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양곡에 대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 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, 정부가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쌀값 등의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며,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으로써 양곡가격안정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

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,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, 식량자급률 제고,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, 식량안보를 명시함(안 제1조).
- 나. 공공비축양곡에 밀·콩을 추가함(안 제2조).
- 다.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,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 (안 제3조).
- 라.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마.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 의4 신설).
- 바.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
 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및
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포함함(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).
- 사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·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

- 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,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6조제4항).
- 아.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자. 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재배면적 조정비율에 따른 지원은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적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16조의3).
- 차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에 대하여 연도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, 논타작물 재배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계획에 반 영하도록 함(안 제16조의4 신설).
- 카. 선제적 수급조절의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의5 신설).
- 타.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, 미곡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

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(안 제16조의6 신설).

- 파.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·수요·재고 등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·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7 신설).
- 하. 양곡(밀, 콩 등)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,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 및 제22조의2).

법률 제 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확보함으로써"를 "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"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미곡과"를 "미곡 • 밀 • 콩과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"정부관리양곡의"를 "양곡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매년 정부관리양곡의"를 "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심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한다"를 "하고,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- 3.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
- 4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
- 5.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"국무회의의"를 "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

의"로, "대통령의"를 "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판매가격은"을 "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으로 한다.

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(이하 이 조에서 "보관시설"이라 한다)에 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수·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의4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 곡의 매입·보관·가공·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판매가격은"을 "판매물량은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 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, 매입·판매가격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식량자급률의 증진,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, 콩 등 공공비축양 곡의 비축·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「정부기업예산법」 제3조제3호 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.

제16조의 제목 "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"를 "(양곡수급안 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공표하여야"를 "공표하고, 이를 이행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시기·절차"를 "절차"로, "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·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"을 "사항은"으로 한다.

- 3.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
- 4.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- 1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: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 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매입.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.
- 2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: 정부관리양곡의 판매

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,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6조의2(양곡수급관리위원회)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 곡수급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3. 제16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·판매여부, 매입·판매물량, 매입·판매시기 및 매입·판매가격
- 4.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
- 5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 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- 3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3(종전의 제16조의2)의 제목 "(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)"를 "(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6조의2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"를 "「농업・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급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"재배면적 조정대상자"라 한다)로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미곡의 재배면적을 감축 또는 조정하게 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 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재배면적 조정에도 불구하고, 재배면적 조정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을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지역별 미곡 생산량 비중등을 고려하여 감축 또는 조정 면적을 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배정된 재배면적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조정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 결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시·도지사에게 행정적·재정적인센티브를 확대 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실적이 부진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, 조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시정 요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정계획 및 조정실적의 기재

사항,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4(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)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 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 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면적에 대하 여 연도별 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, 논타작물의 재 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하여 생산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,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과 목표 달성 여부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

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16조의5(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 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
 제16조의6(양곡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
 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
 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시장가격이
 제3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기준가격[평년가격(직전 5년중 최저가격
 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
 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 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2
 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
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
 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양곡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
 할 수 있다. 다만, 미곡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

- ·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총생산량(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을 포함한다)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 정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미곡의 경우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의 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1.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운영이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목
- 2. 확정 · 고시된 양곡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
- 3.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) 의 지급비율
- 제16조의7(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·수요·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·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·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 제목 중 "미곡유통업의"를 "양곡유통업의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"를 "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곡의"로, "미곡 매입"을 "양곡 매입"으로, "미곡의"를 각각 "양곡의"로, "미곡유통업을"을 "양곡유통업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"을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"으로, "미곡의"를 각각 "양곡의"로, "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"을 "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"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.

- 1.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· 홍보 사업
- 2.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
- 3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- 4.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
- 2.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 - 2.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 - 3. 제1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"미곡종합처리장"을 "양곡종합처리장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양곡의 효율	제1조(목적)
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	
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	
을 안정적으로 <u>확보함으로써</u>	<u>확</u> 보하고 생산
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	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
로 한다.	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
	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
	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"공공비축양곡"이란 양곡부	3
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	
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	
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	
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	
는 <u>미곡과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	<u>미곡·밀·콩과</u>
는 양곡을 말한다.	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	제3조(<u>양곡의</u> 수급계획 수립) ①

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<u>매년 정부관리양곡의</u> 수급 계획(이하 "양곡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-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1.・2. (생 략)
- 3.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<u>4.</u> (생 략)

- ③ (생 략)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
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
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
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
<u>관리</u>
4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
기본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
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
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
한 사항
5.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과
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
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
<u>6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4
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

제5조(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 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다.

② (생략)

- 제9조(정부관리양곡의 판매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.

③ ~ ⑤ (생 략) <신 설>

	출하여야 한다.
제	5조(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)
	①
	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
	관리위원회의
	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
	<u> 정의</u>
	② (현행과 같음)
제	9조(정부관리양곡의 판매) ①
	(현행과 같음)
	②
	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
	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
	원회의 심의를 거쳐
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정부관리양곡 보관 실 태점검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(이하 이 조에서 "보관시설"이 라 한다)에 대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 다.

<신 설>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 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수·보 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의4(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・운영)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・보관 ・가공・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활수 있다.

제10조(공공비축양곡의 비축・운 | 제10조(공공비축양곡의 비축・운 용) ① • ② (생 략)

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・판매 가격은 매입・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.

<신 설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 관리시스템의 관리 · 운영을 위 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 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・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

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물량은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, 매입・판매가격은-----

④ 식량자급률의 증진, 양곡 수 급관리를 위한 밀, 콩 등 공공 비축양곡의 비축・운용에 필요 ④ (생략)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기수급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있다.

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(이하 "생산자단체대표등"이라 한다)과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

한 비용은 「정부기업예산법」
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
별회계에서 지출한다.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16조(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
및 시행 등) ①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
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
추진계획
4.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재
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
진계획
②

수립·<u>공표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 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.

- <u>공표</u> 중	├고, °	기를	이행	하여여	<u> </u>

③ (현행과 같음)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미곡의 수급안정대 책을 수립·시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에 해 당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·시 행하여야 한다.
 - 1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: 농업 협동조합등을 통하여 해당 연

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, 매입·판매 물량의 산정, 매입·판매의 <u>시기·절차</u>,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<u>사항과 생산자단</u>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·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⑥ · ⑦ (생 략) <신 설>

노이	네 생각	산되는	미	곡에	다	한
<u>수</u> 요	오량을	초과ㅎ	누는	생산	량	또
는	예상	생산령	붕의	매일]	0]
		입가격은				
<u>곡</u> 의	의 매일]가격으	므로	한다.		

2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: 정부 관리양곡의 판매

(5) -				
			- <u>절차</u> -	
	<u>></u>	<u> </u>		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 제16조의2(양곡수급관리위원회)
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
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의 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 행
- 3. 제16조제3항 ·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 · 판매여부, 매입 · 판매시기 및 매입 · 판매가격
- 4.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
- 5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

성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센터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

 산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

 추천하는 사람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- 3.
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

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

제16조의2(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 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 곡을 재배하고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 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전문성을 가진 사람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제16조의3(미곡의 수급 안정을 재배면적 관리) 농림축산식품 위한 재배면적 관리) ① ----------「농업・ <u> 농촌 공익기</u>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_ 제11 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 | 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 급대상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급대상 자(이하 이 조에서 "재배면적 조정대상자"라 한다)로-----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대상 자에게 미곡의 재배면적을 감 <신 설>

<신 설>

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의 재배면적 조 정에도 불구하고, 재배면적 조 정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을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 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지역 별 미곡 생산량 비중 등을 고 려하여 감축 또는 조정 면적을 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 도지사는 배정된 재배면적에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대한 조정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조정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실적을평가하고,평가 결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시·도지사에게 행정적·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 실적이 부진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, 조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시·도지사에게 시정 요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.

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정계획 및 조정실적의 기재 사항,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평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4(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

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 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세14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 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 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 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 배면적에 대하여 연도별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여 야 하며,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 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 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, 판 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 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

<신 설>

야 한다. 이 경우 논타작물 재 배지원 시행계획과 목표 달성 여부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의5(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제 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.

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

<신 설>

<u>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</u> 사업

제16조의6(양곡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 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 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 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 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・고시된 기준가격 [평년가격(직전 5년중 최저가격 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 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 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양곡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미곡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

대책을 수립·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총생산량 (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을 포함한다)이 같은 연도 총소비 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양곡가격안정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정하여 실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1.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운영이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목
- 2. 확정·고시된 양곡가격안정 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
- 3.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 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)의 지급비율

<u>제16조의7(미곡수급관리시스템</u> <u>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</u>

<신 설>

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 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·수요·재고 등 수급과 관련 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 적으로 수집 · 분석 ·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 축・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・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 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하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.

제22조(\underline{n} 곡유통업의 육성) ① \underline{s} 제22조(\underline{v} 곡유통업의 육성) ① \underline{s}

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·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·선별·보관·가공·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.

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</u> 농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<u>미곡의</u> 유통기능을 능률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<u>미곡종합처리장</u> 등 미곡을 건조·보관·가공· 유통·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<u>미곡의</u>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 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 <신 설> 김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양곡의 유통구조 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양곡 매 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 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 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 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.

2	국가 !	및 지병	방자치	단체는	≟ <u>≐</u>
			냥곡의		
			<u>o</u> }.	곡종힙	처리
<u>장</u>	등 양	곡을-			
		<u>양곡</u>	<u> </u>		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)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1.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
- 2.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 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
- 3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- 4.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 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원할 수 있다.
- 1.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
- 2.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 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(과태료) ① -----

- 1.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2.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

	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
	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
	<u>따르지 아니한 자</u>
<u><신 설></u>	3. 제1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
	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
	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
<u>1.</u> ~ <u>6.</u> (생 략)	<u>4.</u> ~ <u>9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6
	호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